

예 산 총 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79,403,887	11,382,117
일반회계		351,589,742	10,547,692
특별회계		27,814,145	834,424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7,814,145	834,42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284,203	338,526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554,655	16,6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특별회계	1,089,801	32,694
	수질개선특별회계	11,398,659	341,960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93,000	8,79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746,761	82,403
	주차장특별회계	447,066	13,412

제 2 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07,27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 상호 이용 할 수 있다.